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1. 30 선고 2021가단135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1. 9.

판 결 선 고 2021. 11. 3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경남 고성군 D 임야 8,926㎡에 관하여 2016. 6. 7.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6. 6. 8.접수 제10051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6. 6. 8. 접수 제10052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12. 3.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소12118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7. ‘C는 원고에게 11,515,325원 및 그 중 8,55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1. 17. 확정되었다.

나. 근저당권 양도

1)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7. 2. 채무자 E,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1994. 6. 14. C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8. 3. 채무자 E,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1997. 3. 13. C에게 이전되었다.

2) C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6. 7. 피고와 확정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8. 피고 앞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7.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진석